

물품도입(처리)심의위원회규정

제 1 조 (설치) 본 규정은 기자재의 도입 및 구매, 사후관리, 불용처리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물품도입(처리)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(개정 2016.4.21.)

제 2 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사무처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정보전산원장, 학(부)장, 학사관리팀장, 담당팀장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08.4.22, 2011.4.18., 2012.8.1., 2014.12.1., 2016.12.1., 2018.7.1., 2021.6.1., **2023.9.1.**)

②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며,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 (개정 2011.4.18., 2012.8.1.)

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 의장을 지명할 수 있다.

제 3 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(개정 2016.4.21.)

1. 비품 도입 및 구매에 관한사항
2. 비품 사후관리 등에 관한사항
3. 비품 불용처리 등에 관한사항
4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 4 조 (회의) ①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5 조 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물품관리 담당직원으로 한다. (개정 2006.12.27., 2014.12.19.)

부 칙

①(시행일) 본 규정은 200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②(준용)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재가를 얻어 처리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본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②(준용) 본 개정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재가를 얻어 처리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본 개정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준용) 본 개정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재가를 얻어 처리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규정의 개정과 동시에 종전의 “비품관리위원회 규정”은 폐지한다.

제3조 (경과조치) 이 규정의 개정과 동시에 종전의 “비품관리위원회 규정”상의 기능은 물품도입 (처리)심의위원회 규정상 기능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